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28 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이병진·성일종·안규백

김병주 · 조경태 · 홍기원

주철현 • 서미화 • 이상식

송재봉 • 어기구 • 김현정

권향엽ㆍ허 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평택시의 경우 매년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캠프 험프리스 근무를 위하여 평택시로 유입되고 있어 주한미군과 시민이 상호이해 를 증진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과 관련 된 상징물의 건립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'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'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 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29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3(현충시설 건립 보조금 지급의 특례) 국가는 평택시의 현충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택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전에 현충시설 건립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29조의3(현충시설 건립 보조금
	지급의 특례) 국가는 평택시의
	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
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	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
	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
	평택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
	른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전
	에 현충시설 건립 사업계획을
	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
	인을 받아야 한다.